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

의안 번호	1461

제출연월일: 2020. 5. .
제 출 자: 성동구청장

1. 제안이유

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자·출연을 통한 중소기업·소상공인 및 소셜벤처에 대한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기업경영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1) 주요변경 내용

- 2020년 기금지출계획 중 예치금 감액과 출자금 및 출연금 증액

(단위: 천 원)

1991년(기금설치) ~ 2019년 출자 및 출연 현황	2020년 기금 지출계획 변경내용			비 고
	지출항목	증 액	감 액	
○ 출자 없음 ○ 2004, 2009, 2011, 2013년(각 1억 씩 총 4억 원 출연)	출 자 금	500,000	-	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제5항
	출 연 금	400,000	-	기금 융자 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
	예 치 금	-	900,000	

※ 예치금: 회계연도 말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다양한 형태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

2) 변경사유

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제5항에 근거한 투자조합 신설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
-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7조제1항,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위한 기금 일부 출연

3) 수입·지출 계획 변경(안) (단위: 천 원)

수 입				지 출			
항 목	당 초	변 경	증 감	항 목	당 초	변 경	증 감
합 계	11,429,674	11,429,674	-	합 계	11,429,674	11,429,674	-
전입금	2,200,000	2,200,000	-	융자금	8,500,000	8,500,000	-
융자금 회수	5,663,152	5,663,152	-	이차보전금	300,000	300,000	-
공공예금 이자	46,000	46,000	-	운용위원회 수당	2,000	2,000	-
융자금 회수 이자	196,240	196,240	-	**출연금**	**0**	**400,000**	**400,000**
예치금 회수	3,317,344	3,317,344	-	**출자금**	**0**	**500,000**	**500,000**
예탁금 이자	6,938	6,938	-	지역경제 혁신센터 운영비	210,500	210,500	-
				예치금	**2,417,174**	**1,517,174**	**△900,000**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○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(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)제5항

○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7조(기본재산)제1항

○ 「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4조(기금의 용도)

< 관 련 법 령 >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**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**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

제4조(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) ①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(이하 "기금관리주체"라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·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행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·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·허가·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③ 삭제

④ 「보험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,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⑤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 중소기업·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1.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
2. 신기술사업투자조합
3.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
4.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

지역신용보증재단법

제7조(기본재산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(財源)으로 조성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2. 금융회사등의 출연금
3. 기업의 출연금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

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·도에 보조할 수 있다.

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, 시·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, 출연의 방법 및 시기,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 4. 14.]

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,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
2.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
3.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4. 중소기업 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
5.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금
6. **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**